『人文科學』 제123집 2021년 12월
DOI http://doi.org/10.23017/inmun.2021.123..41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소장 선교사 편지 고찰: 1903년 해주에서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윤현숙**

Ⅰ. 머리말

18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의 기록물은 일기, 편지, 보고서 등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편지의 형식으로 쓰인 자료들은 주로 수신인과 관련이 깊은 기관이나 장소에 보존되어 있다. 지금까지 소개된 선교사 관련 편지는 장로교역사연구소와 같은 파송을 주관한 기관이나 가족이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자료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말로 옮겨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기관 등에 산재되어 빛을 보지 못한 내한 선교사들의 편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

*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0S1A5C2A02092965)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과제번호:2020-12-0150)
**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황에서, 선교사 자료의 현황을 조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장윤금[1]과 각국의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선교사 편지 목록을 두루 소개한 한미경[2]의 연구 성과는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선교사 편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소장 자료들이 영어로 되어 있고 필기체로 쓰인 원본들이 대부분이어서 쉽게 읽고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0년 9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한 '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내외에 소장된 선교사 편지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기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선교사 편지의 원문과 번역문은 물론, 해제까지 제공하는 통합적인 연구의 기초자료 생산 과정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새로운 편지들도 발굴되었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의 컬렉션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Records of Foreign Posts of Department of States(RG84)]'는 정부 보존 기록관 유형에 해당된다.[3] 여기에는 아펜젤러(Appenzeller, Henry G.), 벙커(Bunker, Dalziel A.) 등 선교사의 편지 수백 통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언더우드(Underwood, Horace G.)의 편지도 100여 통 들어 있다.

언더우드의 선교 편지는 미국 장로교역사연구소(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소장본이 번역본으로 간행된 것이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소장본 편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편지이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 편지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발굴하게 된 컬렉션의 편지를 번역하고,[4] 그 중 일부를 본고에서 소개하는 기회로 삼고자

1) 장윤금 (2013).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1800-1910). 정보관리학회지, 통권90호, 265-281.
2) 한미경 (2020). 내한 선교사 편지(1884-1942)와 디지털 아카이브 파주: 보고사.
3) 한미경 (2020). 42~54쪽.
4)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의 일환으로 영문전사 및 번역이 완료되

하였다.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업적을 세운 인물이다. 수많은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고 사전 편찬 등 한국어 관련 책도 집필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선교사가 쓴 편지 중에서 정부 보존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던 편지들은 언더우드의 어떤 면모를 부각시켜줄지 주목해 볼 만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처음 발굴하여 번역한 초기 내한 선교사 언더우드의 편지를 소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편지는 번역본으로 이미 소개되어 있는 편지와 소장처가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료 소개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고 2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편지와 새로 소개하는 편지를 연도, 수신자 등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특정 시기에 쓴 편지를 따로 분리하여 편지의 내용 요소를 분석하였다.

둘째, 소개하는 컬렉션 편지 중 몇 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대하는 당대 선교사의 입장과 태도를 들여다보았다. 1903년 2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알렌에게 보낸 편지가 그 대상인데, 주로 언더우드와 마펫(Moffett, Samuel A.)이 공동 발신자이고 발신 장소는 황해도 해주이다. 당시 해주에서는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을 포함한 민간인, 그리고 관청과의 충돌로 몇 년 동안 관련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때의 사건들을 해서교안(海西教案)이라고 한다.[5] 얼핏 종교적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관련 국가들 사이에 조약을 체결한 후에야 진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언더우드는 평양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마펫과 헌트(Hunt, William B.)의 추천, 그리고 미국 공사 알렌(Allen, Horace N.)의 요청을 받고 해주로 향하였다. 1903년 2월 7일에 해주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고, 전 과정을 세밀하게 편지에 담아 전달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편지들은 언

었다.

5) 해서교안 관련 연구는 주로 천주교회사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졌지만 활발하게 이어지지는 않은 편이다.

더우드와 마펫이 함께 작성한 것인데, 본고에서는 공동 발신자 중 언더우드 편지 범주에 포함하여 소개하였다.

셋째, 장르적 규범에 충실한 기록물이 내용 전달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번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본고 4장에서는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두 자료, 선교사 편지와 사건 조사보고서 『해서사핵사주본』의 서술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특정 날짜나 구체적인 한 장면을 정해서 교차 확인하였다. 당시의 선교사 편지가 보고서로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편지라는 형식적 틀 안에서 수신인을 대상으로 서술한 양상이 한국 정부의 관리가 작성한 공식 보고 문서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주목하였다.

Ⅱ. 새로 소개하는 선교사 편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언더우드 편지는 대부분 미국 장로교역사연구소(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소장본으로,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번역본으로도 간행되었다.[6] '편지'라는 것은 작성한 사람의 손을 떠나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현전하는 편지의 소장처는 수신자와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 온 언더우드 편지의 수신자가 주로 동료 선교사나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본부인 것도 편지와 소장처의 밀접한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 된다. 나아가, 수신자에 따라 편지의 주제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소장처와 편지 주제와의 연관성도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컬렉션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RG84)' 소장 언더우드 편지는 내한 선교사 편지 연구의 범위 확장에 초석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컬렉션은 한미경이 조사하고 정리한 <내한 선교사 편지가

6) 김인수 옮김 (2002).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1885-1916).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이만열·옥성득 편역 (2007-2010). (연세국학총서48)언더우드 자료집 Ⅰ-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포함된 컬렉션 리스트(북미 지역 기록관 중심/2020년 기준)>[7] 136개 컬렉션 중 하나이다.

2장에서는 언더우드 편지의 소장처 별 비교에 주력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새로 소개하는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소장 편지와 장로교역사연구소 소장 언더우드 편지의 목록을 비교한 것이다. 편지는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도, 연도별·수신자별 편지 건수, 수신자, 수신자 직업이나 발신자와의 관계를 주요 항목으로 삼아 정리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수신자와 소장처와의 밀접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장로교역사연구소 소장 편지 총 255건 중에서 215건이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 본부(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와 그 관련자에게 보낸 편지이다. 반면에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소장 편지 98건 중 5건을 뺀 93건이 미국 공사관 관련자에게 보낸 편지이다.

<표 1>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 장로교역사학회 외 소장 언더우드 편지 목록 비교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소장 언더우드 편지[8]				장로교역사학연구소 외 소장 언더우드 편지			
연도	편지 건수	수신자 (건수)	수신자 직업/관계	연도	편지 건수	수신자 (건수)	수신자 직업/관계
1885	0			1885	8	Ellinwood (8)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886	0			1886	10	Ellinwood (7)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Foulk (1)	미국대리공사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미국 장로교 해외선교 본부) (1)	단체

7) 한미경 (2020). 179쪽(부록 2).

						The Presbyterian Mission to Korea(장로교 한국 선교부) (1)	단체
1887	0			1887	13	Ellinwood (10)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Allen (1)	선교사
						Wells (1)	선교사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 본부 (1)	단체
1888	9	Dinsmore (6)	미국공사	1888	14	Ellinwood (12)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Charles (3)	서기관(미국공사관)			Mrs. Hepburn (1)	재일 선교사
						미상 (1)	
1889	2	Dinsmore (2)	미국공사	1889	13	Ellinwood (12)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미상 (1)	
1890	4	Heard (4)	미국공사	1890	10	Ellinwood (8)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Allen (1)	선교사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 본부 (1)	단체
1891	0			1891	13	Ellinwood (13)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892	0			1892	6	Ellinwood (6)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893	0			1893	3	Ellinwood (2)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 본부 (1)	단체
1894	2	Allen (1)	선교사(1897년부터 미국공사)	1894	3	Ellinwood (3)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Sill (1)	미국공사				
1895	0			1895	0		
1896	0			1896	2	Ellinwood (1)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 본부 (1)	단체
1897	1	Sill (1)	미국공사	1897	3	Ellinwood (3)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898	5	Allen (5)	미국공사	1898	2	Ellinwood (2)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899	0			1899	2	Ellinwood (2)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900	2	Allen (2)	미국공사	1900	7	Ellinwood (5)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Brown (1)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미상 (1)	
1901	3	Allen (3)	미국공사	1901	7	Ellinwood (7)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902	0			1902	3	Ellinwood (2)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Halsey (1)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903	**26**	**Allen (22)**	**미국공사**	**1903**	**11**	**Brown (5)**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Allen (2)	**미국공사**
						Ellinwood (1)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Paddock (3)	**서기관(미국대리공사)**			**영국 성서공회 (1)**	**단체**
		Gale (1)	**선교사**			**미국 성서공회 (1)**	**단체**
1904	9	Allen (7)	미국공사	1904	6	Brown (4)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Paddock (1)	서기관(미국대리공사)			Moffett (1)	선교사
		이종림 (1)	한성재판소 판사			McAfee (1)	선교사
1905	3	Paddock (2)	서기관(미국대리공사)	1905	4	Brown (4)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Allen (1)	미국공사				

1906	10	Paddock (10)	서기관(미국대리공사)	1906	5	Brown (3)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 본부 (1)	단체
						Halsey (1)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907	0			1907	3	Brown (1)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 본부 (1)	단체
						John Fox (1)	미국성서공회 총무
1908	0			1908	9	Brown (9)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909	5	Gould (4)	미국부총영사	1909	8	Brown (6)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Sammons (1)	미국총영사			Day (1)	북장해외선교부 재무담당자
						Griffis (1)	재일 선교사
1910	7	Scidmore (7)	미국총영사	1910	6	Brown (4)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Halsey (1)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Stevenson (1)	목사
1911	5	Scidmore (5)	미국총영사	1911	6	Brown (4)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Halsey (1)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John T. Underwood (1)	형
1912	1	Scidmore (1)	미국총영사	1912	4	Brown (4)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1913	1	Scidmore (1)	미국총영사	1913	8	Halsey (3)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Brown (2)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Goucher (2)	선교사

						선교부 공동위원회 (1)	단체
1914	4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 (2)	기관	1914	31	Brown (22)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Goucher (3)	선교사
						Halsey (2)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Gale (1)	선교사
						John T. Underwood (1)	형
						McCune (1)	선교사
		Curtice (2)	미국영사(대리)			Sammons (1)	미국총영사
1915	1	Curtice (1)	미국영사(대리)	1915	31	Brown (25)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John T. Underwood (2)	형
						Goucher (1)	선교사
						North (1)	목사
						Speer (1)	선교사
						조선기독교대학 (1)	기관
1916	0			1916	4	North (2)	목사
						Brown (1)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Goucher (1)	선교사

이 표를 통해 편지의 수신자-소장처-내용 및 주제가 당위적으로 연결된다고 확인이 된 셈이다. 본고 2장의 주요 목적은 새로 발견한 편지의 소개[9]이기

8)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기록물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구입해서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하여 공개하고 있다(허경진(2021). 처음 발견된 언더우드의 한문 편지. 기독교사상, 통권 제750호). “Department of State. U.S. Legation; Korea [발행년불명]. RG84, 84.2 외교공관 기록, 1788-1962, 한국, 1882-1955, box 34, 알렌에게 발신된 편지와 전보.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출처: http://archive.history.go.kr/catalog/view.do?arrangement_cd=ARRANGEMENT-0-A&arrangement_subcode=HOLD_NATION-0-US&provenanace_ids=000000000034&displaySort=&displaySize=50&currentNumber=1&system_id=000000058093”

때문에, 전체적인 목록의 비교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어야겠지만, 특히 1903년에 언더우드가 마펫과 함께 쓴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소장 편지 목록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보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장 건수의 차이이다. 같은 컬렉션 소장 편지들과 비교해 보아도 1903년에 쓴 편지가 다른 연도에 비해 많고 장로교역사연구소 소장 편지보다도 훨씬 많은 수이다.

편지는 '소식이나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이다. 즉, 편지의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전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편지를 보낸 날짜가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수신자는 외교관이다. 아래의 <표 2>는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소장 편지 중에서 1903년에 언더우드와 마펫이 쓴 편지의 내용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구분·유형화[10]한 것이다. 특히 '내용 요소별 세부항목'을 자세하게 적시하여 내용 파악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표 2>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소장 1903년 언더우드・마펫 편지 내용 분류

날짜	수신자	수신자 직업/관계	내용 요소별 세부항목	분류 유형
02.10[11]	Allen	미국공사	전보, 해주, 사건, 조사, 프랑스 사제, 프랑스 공사관, 외부(外部), 공식 통지서, 편지, 미국 교회, 그리스도인, 체포, 포졸, 로마 가톨릭, 서울	건축·시설 정치·외교 지역·산업 종교·사상
02.11	Allen	미국공사	평양, 해주, 조사, 신환포, 프랑스 사제, 체포, 포졸, 관청, 재판, 치안판사, 로마 가톨릭교도, 한국의 법, 장연, 협정, 관청의 권위, 감독관, 군대, 토착인, 공권력, 프랑스인, 영국, 일본, 언론 보도, 한국의 보전, 동양의 평화	지역·산업 정치·외교 종교·사상
02.18	Allen	미국공사	법정, 조사관, 외부(外部), 죄수, 석방, 프랑스 공사, 고문, 투옥, 전보, 구타, 재판, 증언, 죄수, 고소인, 대질심문, 공범, 습격, 침입자, 갈취, 신부, 개신교,	**정치·외교** 종교·사상

9) 이 편지들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의 일환으로 영문전사 및 번역이 완료되었다. 본 발표에서 인용하는 편지의 번역문은 모두 그 성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0) 이러한 분류 항목의 추출은 추후 DB 항목 설계의 기초 정보가 되며, 특정 분야에 관한 자료 및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결박, 로마 가톨릭, 서흥, 한자 문서, 증빙자료	
02.18	Allen	미국공사	(전보) 조사관, 프랑스 공사, 외부, 고문, 죄수, 석방, 피고	**정치·외교**
02.26	Allen	미국공사	청계동, 순검, 프랑스 공사, 조사관, 장연, 신환포, 그리스도인, 재판, 로마 가톨릭, 사건, 고문, 강도, 진술, 명령, 체포, 서울, 소환, 비서관, 외부(外部), 영어, 한국어, 사제들, 프랑스어, 관청, 군대, 평산, 포박	지역·산업 **정치·외교** 종교·사상
03.02	Allen	미국공사	장연, 선언문, 사건, 체포, 진술, 혐의, 구타, 무력, 서울, 최고재판소, 유죄판결, 소요, 개신교, 재령, 탈주자, 청계동, 프랑스 공사관, 통역, 외부(外部), 고문, 프랑스 비서관, 해주, 총, 도피, 군졸, 순검	지역·산업 **정치·외교** 종교·사상
03.03	Gale	선교사	(전보) 프랑스 비서관, 순검, 소환, 도망자, 인계, 자백, 미국 관료	**정치·외교**
03.04	Allen	미국공사	프랑스측 대표, 조사관, 순검, 청계동, 도망자, 해주, 무력, 상해, 자백, 죄수, 집행, 사제, 석방, 한국 정부, 한국인, 전보	**정치·외교** 지역·산업
03.04_9 PM	Allen	미국공사	미국 공사관, 전보, 정의 집행, 공적인 경찰력, 체포, 순검, 법정, 조사관, 제복, 한국의 관습, 수배범, 재판, 프랑스 비서관, 프랑스인, 미국인, 서울, 로마 가톨릭, 경범죄, 외부(外部), 포졸, 죄수 석방, 보석금, 감옥	**정치·외교** 지역·산업 종교·사상
03.05	Allen	미국공사	해주, 도망자들, 체포, 순검, 사제, 구타, 재판, 주범, 사건, 도주, 외부(外部), 조사관, 전보, 프랑스인, 미국 공사, 프랑스 공사, 비서관의 권한, 재판관, 감옥, 보석금, 서울	**정치·외교** 지역·산업 종교·사상
03.05	Allen	미국공사	프랑스 공사, 비서관, 재판 참석, 감옥 점검	**정치·외교**
03.06	Allen	미국공사	조사관, 외부(外部), 프랑스 공사, 비서관, 정부의 태도, 황실, 로마 가톨릭교, 신환포, 군수, 우두머리, 석방, 죄수, 해주, 자백, 형량, 토지 증서, 서흥, 항의서	**정치·외교** 종교·사상 지역·산업
03.09	Allen	미국공사	프랑스 비서관, 조사관, 서울, 탈주자들, 면담, 국왕(고종), 조사, 전보, 순검, 청계동, 평산 마을, 로마 가톨릭	**정치·외교** 종교·사상 지역·산업
03.09	Allen	미국공사	(전보) 주범, 체포, 탈주 방조, 청계동, 점거, 재판 승인	지역·산업
03.12	Allen	미국공사	범인, 체포, 신환포, 로마 가톨릭 교회, 조사관, 주임 비서관, 자수, 재판, 포박, 교회 건립, 고문, 혐의, 권리, 폭행, 증언, 청계동	종교·사상 지역·산업
03.13	Allen	미국공사	통역자, 조사관, 청계동, 증언, 고소인, 혐의, 구타, 교회 설립, 선언문, 신환포 교회, 개신교인, 고문, 토지 매각, 청계동, 평산군, 서흥군, 로마 가톨릭,	**정치·외교** 종교·사상 지역·산업

			군수, 종교, 재령시, 프랑스 공사, 서울	
03.16	Allen	미국공사	재판, 피고인, 고소인, 조사관, 대질 심문, 군중, 명령, 구타, 재령시, 순검, 신환포, 청계동, 전보, 프랑스 공사관	**정치·외교** 지역·산업
03.17	Allen	미국공사	재판, 구타, 증거, 로마 가톨릭, 신환포, 개신교인, 청계동, 고문, 재령시, 조사, 서울, 해주, 청계동, 통신	종교·사상 지역·산업
03.18	Allen	미국공사	법정, 대질, 로마 가톨릭, 조사관, 증언, 주장, 전보, 청계동, 재판, 군졸, 수색	종교·사상 지역·산업
03.18	Allen	미국공사	(전보) 청계동, 재판	지역·산업
03.20	Allen	미국공사	전보, 청계동, 로마 가톨릭 사제, 조사관, 선언문	지역·산업 종교·사상
03.20	Allen	미국공사	(전보) 청계동	지역·산업
03.23	Allen	미국공사	전보, 정보, 청계동, 총, 로마 가톨릭 본부, 소환, 재령시, 방화, 폭행, 조사, 조사관, 증거 자료, 법원 서기	지역·산업 종교·사상

<표 2>에서 제시한 세부항목을 보면 공통적으로 '재판', '법정', '조사관', '체포', '감옥', '진술', '대질' 등 재판 관련 용어가 빠짐없이 나오고, '신부', '로마 가톨릭', '개신교', '교회' 등 종교적인 용어, '공사 비서관', '외부(外部)', '프랑스 공사관', '미국 공사관' 등 정치·외교 용어, '토착인', '해주', '장연', '신환포', '청계동', '서흥' 등 특정 지역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의 재판 과정을 전달하기 위해 쓴 편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연도에 쓴 장로교역사연구소 소장 언더우드 편지의 내용 분류 세부 항목과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표 3> 장로교역사연구소 소장 1903년 언더우드 편지 내용 분류

날짜	수신자	수신자 직업/관계	내용 요소별 분류 항목 세부	분류 유형
01.02	Ellinwood	북장해외 선교부 총무	부산, 서울 지부, 복음전도 사역, 선교본부, 성경 번역, 문서 사역, 서울, 제물포, 북 감리교, 남 감리교, 성공회, 선교사, 북쪽 지부, 의료 사역, 학교 사역, 한국어, 황해도, 세례, 평양, 은율, 해주, 평양 지부, 장로교 선교부 규정과 조례, '그리스도	지역·산업 종교·사상 선교·교회 언어·문화

11) 2월 10일 편지는 해주에 먼저 도착한 언더우드가 단독으로 쓴 것이다.

			신문', 주일학교 출판물, 성경 번역, 성서위원회	
02.10	Allen	미국공사	전보, 해주, 사건, 조사, 프랑스 사제, 프랑스 공사관, 외부(外部), 공식 통지서, 편지, 미국 교회, 그리스도인, 체포, 포졸, 로마 가톨릭, 서울	건축·시설 정치·외교 지역·산업 종교·사상
02.11[12]	Allen	미국공사	평양, 해주, 조사, 신환포, 프랑스 사제, 체포, 포졸, 관청, 재판, 치안판사, 로마 가톨릭교도, 한국의 법, 장연, 협정, 관청의 권위, 감독관, 군대, 토착인, 공권력, 프랑스인, 영국, 일본, 언론 보도, 한국의 보전, 동양의 평화	지역·산업 정치·외교 종교·사상
09.04	Brown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한국의 황후, 신문기사, 편지, 러시아 공사관, 세관 행정관, 부산, 해주, 성경 번역, 선교부, 선교지부, 사역지, 서울, 황해도, 번역위원회, 복음사역, 연례회의, 정동, 성찬식, 교회 조직, 병원, 목재, 세계 의료 협동단체, 의료 설비, 평양 사역	언어·문화 의료·병원 건축·시설 지역·산업 **선교·교회**
09.30	Brown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연례회의, 선교 사역, 캠페인, 연합, 선교사, 보고서, 서울 지부, 성서 번역 사역, 지방 사역, 연못골교회, 정동교회, 정동, 중앙교회, 선교부, 교회 건물, 병원, 한국 정부, 서울, 성경공부반, 부지 획득, 지출금, 토착민, 병원 부지, 신학교	언어·문화 교육·학교 의료·병원 건축·시설 지역·산업 **선교·교회**
10.22	헤이븐(Haven)(성공회)	단체	한국 상임성서위원회, 정관, 수정안, 영국성서공회, 스코틀랜드성서공회, 비준, 뉴욕, 여러 공회, 총무, 선교사, 미국 공회, 성경 사업, 번역자회,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전서, 구약전서, 재개정 문제	**선교·교회**
11.16	Brown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성서 번역, 번역위원회, 위원회, 김포, 동진, 송도, 서울, 황해도, 철길, 남감리교, 선교부, 고양, 교화, 봉덕, 김포, 동진, 할당지역, 토착민, 황해도, 로마 가톨릭 사건, 지방 사역, 세례, 성만찬, 학습문답, 복음의 진리, 서울 지부	**선교·교회** 지역·산업
11.28	Brown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성서번역위원회, 번역 사역, 건물 작업, 일본, 러시아, 만주, 러시아 재판관, 동맹관계, 프랑스 종교, 로마 가톨릭, 미국 개신교 선교사, 한국 정치, 전쟁, 장애, 이익, 정의, 한국 조정, 도교, 미국, 중국	정치·외교 **선교·교회**
12.23	영국 성서공회	단체	영국, 런던, 한글 성경 판본, 한국 선교사, 출판 비용, 선교회, 원산, 한문 성경, 한글 역본, 국한문 혼용문, 신문, 한국 관청, 교육부, 기독교 서적, 성격의 반포, 한국 장로회 공의회	언어·문화 **선교·교회**
12.30	헤이븐(Haven)(성공회)	단체	미국, 런던, 런던 성서공회 위원회, 혼용본, 한국, 장로회 선교회, 선교사, 영국성서공회, 번역자회	언어·문화 **선교·교회**

12.31	Brown	북장해외선교부 총무	사역자, 보고서, 장로회 교회, 선교지, 중국, 뉴욕, 신학교, 선교 본부, 여성 사역, 브룩클린의 여자선교사 훈련원, 지부, 중앙교회, 건물, 선교 본부, 재정위원회, 차등 임대료, 연례회의, 선교사 봉급, 서울 지부 사역, 집수리, 정동	**선교·교회** 건축·시설 지역·산업

일반적으로 선교사 편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 요소의 분류 유형은 <표 3>에서처럼 '선교·교회', '언어·문화', '의료·병원', '교육·학교' 등이다. 이 중에서도 '선교·교회' 관련 내용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는데, 반면에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소장 편지에서는 주로 '정치·외교' 분류 유형이 두드러진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내한해 머물고 있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근대문물 도입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교육·의료·경제·무역·학술·건축·풍속·언어·문화·사상·제도·기술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있고 선교사들은 현장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본고에서 소개한 1903년 해주에서 보낸 선교사 편지는 특히 한국의 정치·외교 및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서 직접 경험한 현장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정치·외교 및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의 조사 및 재판 과정을 연속적이고 종합적으로 담아낸 이 선교사 편지들은 앞으로도 깊이 있는 내용 탐구와 연구 확장에 기초자료가 되어 줄 것이다.

Ⅲ. 선교사가 전해주는 사건 조사 과정과 외교적 입장들

1903년에 해주에서 보낸 선교사의 편지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보고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

12) 2월 11일 편지는 마펫과 함께 쓴 것이다.

는 사건은 잘 알려진 대로 '해서교안'이다. 처음에는 종교인과 토착민 사이의 다툼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조선 정부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 사핵사 이응익(李應翼)을 파견하였다.[13]

언더우드도 1903년 2월 7일 해주에 도착한 뒤 장연군수 박내훈(朴來勳), 사핵사[조사관] 이응익, 빌렘(Wilhelm, Nicolas J. M.) 신부, 두세 신부(Doucet, Camille-Eugene) 등을 차례로 만나 면담하고 사태 파악을 위해 애썼다. 또 다른 선교사 마펫도 2월 10일 해주에 도착하여 관련 일정에 참여하였다.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컬렉션에 소장된 편지 중 1903년 2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미국 공사(알렌)에게 보낸 편지가 모두 이때 쓴 것들이다. 언더우드와 마펫이 공동발신자이고, 편지 19건 외에 전보도 10건이 있다. <표 4>는 편지 19건의 내용을 날짜별로 요약한 것이다. 2월 10일과 11일 편지는 기존 자료집에도 실려 있지만 사건 내용 전달의 연속성을 위해 함께 소개하였다.

<표 4> 1903년 언더우드· 마펫 편지 내용 요약

날짜	분류	사건 관련 주요 내용
02.10(화)	편지	7일 언더우드 해주 도착[14] / 9일과 10일에 군수, 조사관, 빌렘 신부, 두세 신부를 만나 면담 / 몇 명의 가톨릭교인 체포(신부의 방해가 있었음)
02.11(수)	편지	9일 신환포의 한치순, 장연의 김윤오가 항의서를 제출해서 10일에 조사관이 안태건 등을 체포하도록 명령 / 10일 저녁 조사가 있었음
02.18(수)	전보	프랑스 공사가 죄수들의 석방을 요구 / 조사관은 불응
02.18(수)	편지	낮 12시 재판 법정 방문 / 두세 신부가 죄수 석방 거부를 근거로 재판에 불참 / 조사관은 외부(外部)의 명령 이행 거부하며 두세 신부의 재판 불참석을 비난 / 박진양, 한정수, 김삼재 대질심문 후 유죄 판결
02.26(목)	편지	청계동으로 파견되었던 포졸들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일로 구속 / 사유서 제출 / 체포 방해 혐의로 빌렘 신부의 서울 소환 요청 / 프랑스 공사관의 비서관 파견을 알리는 외부(外部)의 회신 / 군졸 동원 허가, 관청 지원 명령 하달
03.02(월)	편지	2월26일, 2월28일, 3월1일, 3월2일 소식 / 빌렘 신부의 선언문 배포 / 탈주자

13) 李應翼, 「海西查覈使奏本」. "海西查覈使外部交涉局長兼任辦理公使臣李應翼謹奏臣於本年一月二十二日伏奉海西查覈之命二月三日行到" ; 『承政院日記』 고종 39년(양력 1903년), 1월 22일자. "議政府參政金奎弘謹奏, 今聞海州·長淵·信川等郡民人, 有滋鬧之端云, 此必有所由, 不容不另行查覈。 外部交涉局長李應翼, 查覈使差下, 使之不日登途, 嚴覈得[登]聞, 以法從事, 何如? 謹上奏。 奉旨, 依奏。"

		체포를 위해 출동했던 군·포졸의 보고
03.03(화)	전보	전보(게일). 빌렘이 거듭 체포 방해 / 공적 지위에 있는 프랑스 비서관이 죄를 자백한 죄수의 석방을 요구 / 공적 책임감을 가진 미국 관료(미국총영사 패독)의 파견 요청
03.04(수)	편지	3월3일 비서관과 두세 신부가 조사관 방문 / 언더우드, 마펫과 조사관 면담
03.04(수)	편지	밤 9시에 추가로 보낸 편지 / 오후 6시30분 비서관과 면담, 의견 차이 확인 / 미국 공사관 알렌의 전보 회신 / 외부(外部)의 전보 회신
03.04(수)	전보	(3월4일 편지에 동봉) 프랑스 비서관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의견 / 프랑스 비서관에게 협력하도록
03.05(목)	편지	3월4일 밤, 빌렘이 안태건과 함께 해주에 도착 / 언더우드와 마펫이 외부의 전보에 대한 소문 확인 차 조사관 방문
03.05(목)	전보	43번 class. 정보 출처에 대해 함구 요청 / 조사관에게 외부와의 전보 내용 진위 확인 / 외부(外部)에서 비서관의 (5가지) 권한을 인정 / 조사관은 불응
03.05(목)	전보	50번 class. 조사관의 상심과 사임 의사 피력 / 조사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필요성 피력
03.06(금)	편지	외부에서 새로운 내용의 전보가 조사관에게 전달 / 비서관이 조사관과 언더우드와 마펫을 연달아 방문 / 빌렘 신부가 군수와 조사관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 / 서흥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들
03.09(월)	편지	3월7일 토요일 비서관이 재판 연기(월요일까지) 요청 / 약속을 어기면 8일(일요일)까지 안태건을 넘겨준다고 약속 / 3월9일 월요일 아침 비서관의 약속 불이행으로 군·포졸이 청계동으로 출동 / 비서관이 주범 안태건의 탈주 방조
03.09(월)	전보	비서관의 주범 탈주 방조
03.12(목)	편지	11일 수요일 김병호, 박재환 체포 / 두 사람의 진술 위주로 재판 진행
03.13(금)	편지	빌렘 신부가 청계동으로 돌아가려고 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는 소문 / 고소인 8명의 증언으로 재판 진행
03.16(월)	편지	3월14일 토요일 피고인 김병호, 박재환의 재판 / 고소인의 입회하에 대질 심문 / 알렌의 전보(3월14일 토요일 도착) / 알렌의 전보에 대해, 두세 신부는 남아서 재판에 참석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가 떠날 때까지 남아 있기를 희망한다
03.17(화)	편지	3월16일 월요일 오후 1시 시작 재판 내용 보고 / 홍종국, 노성칙, 김형남 등의 새로운 증언과 대면 조사 진행
03.18(수)	편지	3월17일 화요일 오후 1시 재판 내용 보고 / 두세 신부와 언더우드, 마펫이 입회 / 김형남 유죄 판결 후 감옥에 송치 -> 박진양, 박재환, 권원돈과 대질 심문 후 3월18일 수요일 오후 1시 재판 내용 보고 / 청계동에 있는 빌렘 신부가 아프다는 소문 -> 두세 신부 법정에 나오지 않았음 / 김병호 재판 -> 홍종국, 노성칙 증언. 소동의 주동자였다고 증언 -> 김병호 관련하여 최종신이 이전의 죄목까지 상기 / 박재환 재판 -> 홍종국, 노성칙이 증언하자 묵비권 행사
03.18(수)	전보	비서관(서울로)과 빌렘 신부(청계동)의 거취 / 두세 신부의 잔류 / 언더우드의 잔류 의사

03.20(금)	편지	앞부분에 19일에 알렌이 언더우드와 마펫에게 보낸 전보 '테시어가 어디쯤 있는지 모른다, 두세 신부도 소환했다, 두세 신부가 떠나면 떠나라' / 해주 떠날 시점을 계획
03.20(금)	전보	빌렘 신부의 칭병 / 두세 신부 출발 소식 / 출발 일정에 대한 의향
03.23(금)	편지	두세 신부가 떠날 때까지 있겠다 / 마펫은 오늘(3월23일) 떠났다 / 3월 21일 밤에 확인한 결과 빌렘 신부는 병을 칭하고 아직도 청계동에 남아 있다 / 아직도 조사와 확인 필요한 사건들이 남아 있다

이 편지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화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월 10일 편지부터 3월 9일 편지까지, 3월 20일과 23일 편지는 사건과 재판 관련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재판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이나 주변 정황,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입장과 의견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는 편지들이다. 그에 비해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쓴 편지 7건은 구체적인 재판 과정과 내용이 편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표 4>를 토대로 이러한 경향성을 참고하여 편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2월 10일 화요일> 7일 해주 도착 후 9일과 10일의 행적을 보고하였다. 이 편지에서 언더우드는 '미국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 관련 사건이 아니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알렌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편지 내용이 얼마나 공식적이며 얼마나 자세해야 하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2월 11일 수요일> 언더우드와 마펫은 편지 말미에 빌렘 신부를 위시한 천주교인들이 공개적으로 당국과 조사관들에게 저항하고 체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가 군졸들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면 체포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그들이라면 체포를 막기 위해 무력도 불사할 것이므로 '내전'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였다. 군수(장연군수 박내훈)와 조사관(이응익)은 그들의 무력 및 월권 행사에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고, 두 사람은 신부가 거처하는 곳에 혐의자를 체포하려고 들어간 것이 '조약'(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위반인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실제로 포졸 몇 명이 체포 과정

14) 편지를 쓰는 당일인 10일 화요일에는 마펫과 헌트가 해주에 도착하였다.

에서 이에 대한 조약을 위반했다고 투옥되어 있기 때문이다.

<2월 18일 수요일> 이날 편지에는 두 선교사가 알렌에게 보낸 전보가 동봉되어 있다. 전보의 핵심 내용은 '프랑스 공사가 외부(外部)를 통해 고문을 근거로 죄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조사관은 명령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두세 신부는 재판에 참관하지 않는 것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은 전날(17일) 있었던 재판의 증언과 당일 진행된 공범 세 사람(박진양, 한정수, 김삼재)의 대질 심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밝혀냈다. 두 사람은 오늘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목록을 다른 편지에 동봉하여 보냈다고 하면서 이러한 세부사항을 보내는 이유는 '조사관의 보고서가 나왔을 때 참고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언더우드와 마펫의 사건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견지와 전달자로서 가져야 하는 객관적인 입장 유지를 위한 노력은 두 선교사가 쓴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두 사람이 쓴 편지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

<2월 26일 목요일> 이날 편지에 의하면 청계동으로 파견되었던 포졸들이 죄수들을 제대로 체포하지 못한 일로 구속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실제로 이응익의 『해서사핵사주본』에는 포졸들의 이름과 나이를 일일이 밝히며 조사한 내용이 자세히 쓰여 있다. 또 천주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타하고 괴롭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3월 2일자 편지에 등장한다. 이 모든 일들이 빌렘 신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진술과 더불어 그가 체포를 방해했다는 보고를 받은 조사관은 빌렘 신부의 서울 소환을 요청하였고, 곧이어 프랑스 공사관의 비서관의 파견 소식을 듣게 된다. 언더우드와 마펫은 이전의 편지(2월 11일)에서도 밝힌 대로 '군대를 동원하지 못한다면 천주교인들의 체포는 어렵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강력한 조치가 지연되는 것은 천주교인들이 더욱 대담하게 저항하도록 할 뿐'이라고 걱정하였다.

<3월 2일 월요일> 이 날 편지는 빌렘 신부가 장연 지역에 특정 사건에 대한 문서를 배포하여 민심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 사

건[15]은 1901년 7월에 있었던 일로 편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미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다. 언더우드와 마펫에 의하면, 군수와 조사관은 빌렘 신부가 이런 문서를 배포한 것은 외국인이 법의 조치에 개입하려는 시도이자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분개하였다. 두 선교사가 쓴 편지 곳곳에서 전해지는 군수와 조사관의 불만은 당시 신부 및 천주교인과 지방 관리와의 갈등 양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두 사람은 2월 26일(고문 및 강도사건에 대한 진술 청취)과 28일(탈주자 체포를 위해 청계동으로 출동), 3월 1일(비서관 해주에 도착, 조사관이 비서관 방문)과 2일(비서관이 죄수들 방문, 언더우드와 마펫이 비서관 방문, 청계동 출동 군·포졸의 상황 보고) 소식을 빈틈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월 1일에는 프랑스 공사관의 비서관(테시어)이 해주에 도착하였다. 그날 밤 조사관과 비서관은 서로 빌렘 신부의 소환과 군·포졸의 소환을 요청하는데, 결과적으로 빌렘 신부의 소환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언더우드와 마펫은 3월 2일 오후에 비서관을 방문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와 현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3월 2일 아침에는 비서관이 죄수들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와 마펫은 그가 죄수들에 대한 고문이나 구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짐작하였으며, '유죄 판결이 나도 한국의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은 조사관을 방문하여 청계동에 군졸을 파견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며, 그로 인해 프랑스 군인이 오게 된다고 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독려하였다. 조사관은 빌렘 신부만 아니면 관련자들을 다 체포할 수 있다면서 비서관과의 약속(빌렘 신부의 소환을 돕겠다)에 기대감을 드러낸다.

3월 2일 밤 청계동에서 돌아온 군·포졸들의 보고 내용은 편지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들의 접근은 나팔 신호로 미리 알려졌고, 무장한 남자들이

15) 김윤오 사건, 또는 장연 교안이라고도 함.

경계를 섰으며, 빌렘 신부는 그들을 가로막고 영장을 가로채면서 발포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언더우드와 마펫은 이번 일까지 포함해서 빌렘 신부가 정부 관리의 체포를 방해한 것이 네 번이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프랑스 공직자[비서관]가 이곳에 와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의 공직자 파견 여부에 대한 알렌의 의견을 물으며 개신교인이 연루된 사건은 일부일 뿐이지만, 프랑스의 침해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월 4일 수요일> 3월 4일 오전에 완성하여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는 조사관과의 면담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조사관이 우려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의 발생이다. 체포나 조사 과정에서 프랑스인들이 상해를 입게 될 경우 큰 싸움이 일어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한 편으로는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고는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외교적으로 복잡해진 상황에 당혹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건 해결을 위해 온 프랑스 비서관의 처사가 천주교인이나 사제들보다 더 나쁘다고 불평하는 조사관의 솔직한 심경을 가감 없이 전하고 있다.

이 편지에서 두 선교사는 조사관에게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보고의 임무를 띠고 온 외교사절로서의 발언을 한다.

> 그(조사관)가 알게 된 사실들에 근거하여 그것을 제시하면서 엄격하게 정의를 집행하기만 하면 되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조선 정부를 열강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 그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물음으로써 만일 이와 같은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정부가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한 채로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줄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열강들이 조선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그에게 장담하였습니다.16)

16) "We endeavor to persuade the Inspector that it was only necessary for him to bring in his

이 내용은 미국 공사관 알렌에게 보내는 '의견'이기도 하다. 언더우드와 마펫은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 압력을 버틸 수 있는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 공사관의 개입을 요청한 것도 조사관 자신이 공적인 압력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3월 4일 수요일 밤 9시> 이 편지는 3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비서관을 만나고 난 이후에 쓴 것이다. 프랑스 비서관은 언더우드와 마펫이 미국 공사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불만을 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상호 관계 이해가 필요하다는 프랑스 공사의 말을 전달하였다. 또 두 사람은 '체포 방식, 조사관의 재판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며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언더우드와 마펫에게 알렌이 보낸 전보가 전달된다. 이 전보는 컬렉션 목록에는 없고 편지 안에 동봉된 형태로만 전해진다.

> 프랑스 비서관에 대한 당신의 정보는 부정확합니다. 그를 찾아가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인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미국인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항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통역을 도우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7]

---

finding in accordance with the facts as he found them and with strict justice and that the powers would stand by the government in such as position. He replied with the question "when have they ever done so" showing his feast lest if serious complications came with travel the government would be left without support. We were not in a position to make any promises of support tho assuring him that the powers would sustain the government.". Department of State. U.S. Legation; Korea [발행년불명]. RG84, 84.2 외교공관 기록, 1788-1962, 한국, 1882-1955, box 34, 알렌에게 발신된 편지와 전보.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31/161. 출처: https://bit.ly/2GbhGaW

17) "Your information regarding French Secretary incorrect. Call upon and cooperate with him. Avoid suspicions. His presence necessary because French subject concerned. No American directly concerned. Nothing for you to resist. Assist interpret unofficially and thereby your followees and report.". Department of State. U.S. Legation; Korea [발행년불명]. RG84, 84.2 외교공관 기록, 1788-1962, 한국, 1882-1955, box 34, 알렌에게 발신된 편지와 전보.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34/161. 출처: https://bit.ly/2GbhGaW

미국 공사 알렌의 말은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다. 알렌은 프랑스 비서관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다면서 그에게 '비공식적'으로 협력하라고 말했다. 선교사 언더우드와 마펫은 이 전보가 '우리의 관계를 규정'했다고 하면서도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오직 통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일 텐데, 통역관(이효관)과 두세 신부의 의사소통은 완벽하다, 조사관은 유능하며 공정하다, 한국의 일상적인 방식의 체포와 재판 진행 방식을 따르고 있고, 고문이나 협박이 없는데도 프랑스인들이 왜 부당한 요구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알렌의 생각에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날 편지에서는 조사관과 외부(外部) 사이에 오고간 전보의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비록 조사관의 측근에게서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할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프랑스 공사의 요청에 따라 비서관에게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회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관이 '프랑스 비서관을 재판관으로 만든 것'이라며 상심하였고, 언더우드도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만약 지금 프랑스 비서관에게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한국 정부가 프랑스인들에게 굴복한 것인데 조사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18]

<3월 5일 목요일> 이날 편지에는 두 건의 전보가 인용되어 있다. 모두 알렌에게 보낸 것이고 컬렉션에 각각의 문서로 정리되어 있다. 두 전보는 모두 3월 4일에 보낸 편지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 3월 5일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전보 보내는 시점의 앞뒤 정황까지 담겨 있다.

먼저, 3월 4일 편지에서 조사관과 외부 사이에 오고 간 전보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그 전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다. 비서관은 '(1) 재판 참석 (2) 포졸들의 소환 (3) 감옥 점검 (4) 보석금의 수령 (5) 처벌의 공표'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였으며, 외부에서는 이에 대한 권한을 거부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언더우드와 마펫은 이 내용을 조사관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곧바

18) 이틀 뒤, '프랑스 공사 비서관이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외부가 그러한 권한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외부(外部)의 새로운 입장이 전달되었다.

로 알렌에게 전보로 보냈다.

> 정보는 확실히 정확해 보입니다. 다음에 오는 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보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지에서 전보와 관련된 소문은 확인되었지만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장된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전보에서 생략되었는데, 프랑스 공사의 대답은 국가의 비서관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재판 참석과 감옥 점검 외에는 그것을 따를 것을 확고히 거절하고 있습니다.[19]

여기서 '정보'는 전날 보낸 편지 내용이다. 발송한 날짜는 편지가 앞서겠지만 전보가 먼저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편지'를 보시라고 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 전보를 보낸 뒤 곧바로 전보 한 통을 더 보내게 된다. 비서관이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전보를 보냈고, 결국 조사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요구사항에 대한 권한 부여 전보를 받자마자 비서관과 두세 신부는 조사관을 찾아가 외부의 명령대로 요구사항을 모두 수락하라고 강요하였다. 조사관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은 외부의 명령이 아닌 황제의 명령을 따른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이후에 조사관 교체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두 선교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졌다면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또 보냈다.

> 조사관은 프랑스인들의 요구로 상심이 가득 차 있으며 정부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관은 사임을 전보로 알린

19) "Information certainly seems correct see letter coming. Avoid mentioning our source of information. Rumor concerning telegrams in letter verified but need modification. Second demand tho made here omitted in telegram. Reply was French Minister states Secretary has such authority. Inspector firmly refuses compliance except presence at the trials, prison inspection.". Department of State. U.S. Legation; Korea [발행년불명]. RG84, 84.2 외교공관 기록, 1788-1962, 한국, 1882-1955, box 34, 알렌에게 발신된 편지와 전보.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46/161. 출처: https://bit.ly/2GbhGaW

>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임이 수락될 경우 일의 처리가 지연될 것이고, 아마도 한국 정부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부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20]

일이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여 서신보다는 직접 대면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어필하였다. 그렇다고 언더우드나 마펫이 해주를 떠날 수는 없으니 게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곳에서 일요일을 지내고 월요일에 알렌에게 직접 보고'해 달라고 했다니, 두 선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21]

<3월 6일 금요일>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조사관의 사무실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프랑스 공사가 비서관이 요구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부가 그러한 권한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니'라는, 즉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소식이었다. 이로 인해 조사관의 마음은 상당히 안정되었다.

비서관은 곧바로 조사관을 만나고, 이어 언더우드와 마펫을 방문하여 프랑스 공사에게 전보 보낸 일을 이야기하면서 조사관 교체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프랑스 공사가 보낸 전보를 직접 보여주었다. 전보에는 '조사관에게 반대하지 말고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해라, 한국의 천주교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가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빌렘 신부가 군수와 조사관을 제거하려고 일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을 전하였다.

<3월 9일 월요일> 3월 6일 외부의 입장 변화가 전달된 이후로 프랑스 비

---

20) "Worried by French demands, doubtful of government support inspector wired resignation. If accepted long delay and probable defeat of government. He deserves support.". Department of State. U.S. Legation; Korea [발행년불명]. RG84, 84.2 외교공관 기록, 1788-1962, 한국, 1882-1955, box 34, 알렌에게 발신된 편지와 전보.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46/161. 출처: https://bit.ly/2GbhGaW

21) 실제로 게일은 3월 8일 일요일 밤에 해주에 도착하였다.

서관은 협상을 시도했다. 탈주자들을 넘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판 날짜를 월요일(9일)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일요일 저녁까지 안태건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이다. 안태건은 여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1시 50분에 언더우드와 마펫이 알렌에게 보낸 전보에 의하면,

> 테시어(비서관)은 주범을 인계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그(주범)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사흘간 방해했으며, 어제 그가 탈주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현재 청계동은 메이 사제가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서관은 확실한 명령 이전에 피고들이 게일에 의한 세부 사항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재판을 승인하는 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22]

비서관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범의 탈주를 방조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인용한 전보뿐 아니라 같은 날짜의 편지에서도 언더우드와 마펫은 피고인이 참석해야 재판할 수 있다는 조사관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뜻을 비서관에게 분명히 밝혔다. 조사관은 비서관의 처사에 '외국인들은 수치심 없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분노하였다.

Ⅳ. 선교사 편지와 사건 공식문서의 서술 양상 비교

1903년 3월 12일 편지부터 18일까지 알렌에게 쓴 편지는 재판 내용이 주

22) "Teissier had chief criminal here three days prevented arrest under promise to deliver yesterday allowed his escape priest mai now occupies chungkeidong teissier requests order authorizing immediate trial although defendants have fled await details by gale before securing order.". Department of State. U.S. Legation; Korea [발행년불명]. RG84, 84.2 외교공관 기록, 1788-1962, 한국, 1882-1955, box 34, 알렌에게 발신된 편지와 전보.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38/161. 출처: https://bit.ly/2GbhGaW

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재판과 관련된 정황부터 실제 재판 내용까지 날짜별로 이어서 기록하였다.

3월 12일 편지는 당일 있었던 재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3월 11일 자수한 김병호의 진술이 있은 뒤에 같은 날 체포한 박재환이 진술하였다. 두 사람은 신환포 사건[23]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이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은 다른 날(3월 17일) 재판에서 대질 심문을 통해 상당 부분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바로 다음날인 3월 13일에는 고소인 8명의 증언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먼저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구타, 기부금 강탈, 체포 저항, 토지 매각 등의 혐의에 대해 확증이 될 만한 증언을 들었다. 언더우드와 마펫은 모든 혐의에 대한 고소인들의 증언을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편지 말미에는 신환포 사건 재판과는 별개로 몇 가지 소문, 빌렘 신부가 프랑스 공사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청계동으로 돌아가려고 비서관과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 평산과 서흥의 지방 관리가 천주교인들을 부당하게 대한다는 소문, 재령에 있는 가톨릭교회 문들이 뜯겨 나가고 불태워졌다는 소문도 전하였다.

3월 16일 편지는 3월 14일에 있었던 재판 내용을 쓴 것이다. 고소인들 입회하에 박재환, 김병호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편지에서는 알렌에게 청계동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지만, 신환포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꾸준히 체포했다고 하였다. 알렌은 전보를 보내 프랑스 공사관이 비서관과 빌렘 신부를 서울로 불렀으니 두 사람도 그만 돌아오고 수사는 2주 안에 끝내기를 바랐다. 언더우드와 마펫은 두세 신부가 아직 남아서 재판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가 떠나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고 쓰고, 신부가 재판에 참석하는 이상 주요 사건의 주범에 대한 유죄 판결이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3월 17일 편지는 3월 16일 재판 내용을 쓴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종국, 노성칙, 그리고 성명 미상의 고소인과 김형남이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 가장 먼저 홍종국은 두 건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면서 솔직한 자세로 진술하였

23) 1902년 5월 11일 천주교인들이 신환포에 강당을 짓기 위해 기부금을 강요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건.

다. 첫 번째는 신환포 사건이다. 1902년 9월 23일 박재환과 김병호가 주도하여 4명의 개신교인 이치복, 한치순, 최종신, 정기호를 구타하면서 기부금을 강요하는 자리에 있었고 박재환과 김병호가 주도하였음을 증언하였다. 두 번째는 금비녀 사건이라고 알려진 일이다. 김형남과 다른 이들이 금비녀 분실을 빌미로 최종신을 구타하였고 금비녀 대금의 일부를 홍종국 자신이 지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노성칙이다. 홍종국과 같은 신환포 사건 관련 진술을 하였다. 진술 내용은 홍정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67세의 세 번째 조사인은 1902년 12월 31일에 8명의 개신교인들이 청계동으로 잡혀가 고문을 당할 때 가담한 자이다. 그는 빌렘 신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으며 르 각(Le Gac) 신부도 있는 자리에서 재령시로 이송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24세의 김형남이다. 재판정에서 그의 혐의들이 낭독되었고, 금비녀를 숨기고 개신교인들의 돈을 갈취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상, 두 선교사가 재판에 참관하고 쓴 편지를 보면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날짜의 재판 내용을 서술할 때에도 재판의 절차와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전개되는 내용은 상세히 써서 전달받은 사람에게 왜곡 없이 전해지도록 애쓴 흔적이 보인다.

같은 사건 기록으로 사핵사 이응익[24]이 작성한 『해서사핵사주본』[25]이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언더우드와 마펫의 1903년 편지 대부분이 해주에서 있었던 해서교안 재판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해서사핵사주본』을 함께 검토하였다. 356쪽 분량에 국학문 혼용체로 되어 있는 자료의 분석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가설은 한 사건을 대하는 '시각 차이'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 '차이'보다는 '상호 보완'으로 바뀌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건 관련자의 이름이나 지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서사핵사주본』이 큰 도움이 되어서다. 두 선교사의 편지에 사건 관련자들 이름이 다수 등장하는데, 타국의 인명 표

24) 편지에서는 이응익을 '조사관(Inspector)'이라고 일컬었다.
25) 규장각 소장(奎17145), 1冊(178張)

기는 내한 선교사로서 발음이 어려워서, 또는 거꾸로 현 시점의 연구자들에게는 영문으로 표기한 이름을 읽기가 어려워서 오기가 있을 수 있다. 『해서사핵사주본』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자의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 있다. 알아보기 어렵거나 혼동하기 쉬운 표기의 예시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혼동하기 쉬운 인명 표기

원본 / 영문 표기	혼동하기 쉬운 독음	해서사핵사주본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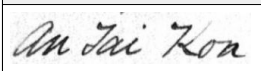 An Tai Kon	안태곤	安泰健(안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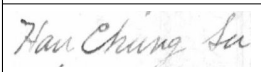 Han Chung Su	한충수	韓正守(한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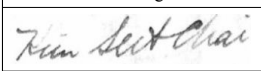 Kim Sect Chai	김석재	金三才(김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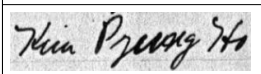 Kim Pyeung Ho	김평호	金炳浩(김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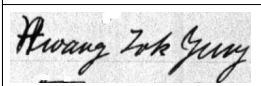 Hwang Zok Yung	황족영	黃德永(황덕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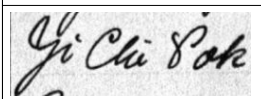 Yi Chi Pak	이치박	李致福(이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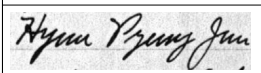 Hyun Pyung Jun	현평준	玄炳俊(현병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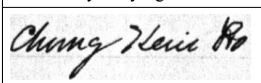 Chung Kei Ho	정계호	鄭基浩(정기호)

지명 중에서는 '신환포(新換浦)'가 'Sinanpo'로, '해주(海州)'는 간혹 'Haichu'로 표기되어 있어 교차 확인하였다.

『해서사핵사주본』은 조사보고서로서 정해진 틀이 있다. 도입부는 대체로 '피고(또는 원고 및 그 외) 누구누구~'로 시작하고 심문이 끝나면 '~니 사안을 살펴주십시오.'라고 마무리하였다. 본문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심문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해 놓았다. 오직 사건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해서사핵사주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편지와는 다르게 재판과 관련한 특정 시점을 알 수 있는 날짜나 시간 정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언제 열린 재판에서 심문 및 진술한 내용인지, 어떤 순서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누가 먼저 진술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편지는 보낸 날짜가 기본적으로 표기되어야만 하고, 더구나 언더우드와 마펫은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정황이나 재판 과정을 구체적으로 수신자(알렌)에게 전달하기 위해 '언제', 또는 '순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편지에 표시하였다.

아래의 인용문은 1903년 3월 17일 알렌에게 보낸 편지이다.[26] 이날(3월 16일) 재판은 오후 1시에 시작되었고 처음 재판장에 서는 홍종국, 노성칙의 심문이 있었다. <a>와 <c>의 밑줄 친 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두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진술을 한 사람은 홍종국이다. 그리고 그 뒤에 노성칙이 조사를 받았다.

> -1903년 3월 17일 언더우드와 마펫이 알렌에게 보낸 편지-
>
> <a> 재판은 평소와 같이 오후 1시에 다시 시작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9월 23일에 구타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집의 소유자인 홍종국이었습니다. **그는 명쾌하고 솔직한 자세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증거들에 개의치 않았으며** ...
>
> <b> 폭행이 일어났던 날 밤, 박재환(그에 관한 자료는 3월 12, 13, 16일의 편지에 기록)은 홍종국(현재 증언하고 있는 재소자)에게 찾아와서 그와

26) 재판 날짜는 3월 16일이다. 전날 재판을 참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날 보낸 것이다. 3월 17일 재판 내용은 18일에 보내는데, 18일 편지에는 17일, 18일 재판 내용을 한꺼번에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사랑채에 불을 밝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재환은 가톨릭교회의 젊은 구성원들 몇몇을 보내어 4명의 개신교인 이치복, 한치순, 최종신, 정기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천주교인들에게 도착했을 때, 박재환(당시 신환포의 가톨릭교회의 지도자), 김병호(박재환의 후계자), 현병준, 홍종국(증인)과 아직 체포되지 않은 원학주와 왕영조가 있었습니다.

박재환과 김병호는 가톨릭교회를 위한 돈을 요구했고, 한치순은 목사가 로마 가톨릭교회의 다른 건물을 내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덧붙이기를, 개신교인들은 외부인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요구하지 않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들의 교회를 지었으며, 가톨릭 신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또 다른 개신교인은 만약 지도자가 가톨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서두른다면, 그의 집을 팔아서 그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박재환은 무력이 아니고서는 이들로부터 돈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박재환, 김병호, 원학주, 왕영조는 개신교인들을 구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명했습니다. 홍종국 역시 이는 김병호와 박재환의 명령이었으며, 그도 개신교인들을 바깥으로 끌어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와 또 다른 사람은 정기호와 이치복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그와 자신의 아내가 그들의 구타를 멈추게 하였고, 그 후 개신교인들을 풀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병호가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그들을 뒤쫓았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

<c> 다음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42세 노성칙입니다. 그는 9월 23일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홍종국의 집 맞은편에 살고 있으며, 그날 밤 한치순, 정기호, 이치복, 최종신을 데려오기 위하여 로마 가톨릭 지도자 박재환이 자신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박재환이 이치복을 수차례 구타했고, 김병호가 정기호와 최종신을 여러 차례 구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불려가서 개신교인들의 상투를 잡아서 끌어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환의 명령과 김병호의 요구에 의해 최종신이 포박되었으나 이후 다른 가톨릭 신자에 의해 풀려났고(홍종국인 듯), 김병호가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도망치는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는 구타에 가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정기호의 상투를 잡은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27]

위의 인용문과 아래 인용문을 비교해 보면, 서술 대상이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두 선교사의 편지 작성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1903년 3월 16일'에 열린 재판 내용이고, 『해서사핵사주본』은 '피고 박재환과 홍정국, 노성칙의 대면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기록하였다. 인용문의 <a>부터 <c>까지, 그리고 <a-1>부터 <c-1>까지는 같은 날 있었던 세 사람의 대면 조사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해서사핵사주본』의 <d>는 1903년 3월 18일 재판 내용이다. 진술 날짜에 상관없이 같은 주제의 진술과 심문 내용을 기준으로 열거했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구성한 것이다.

-이응익, 『해서사핵사주본』 (奎17145 80b)-

<a-1> 피고 박재환과 홍정국, 노성칙을 대면조사하였습니다. ...

<b-1> 홍정국을 처음 공초하였습니다. "박재환이 먼저 집으로 와서 등을 밝히게 하고 노성칙 등으로 하여금 한치순, 정기호, 이치복, 최종신 등을 불러 오게 하고, 박재환과 김병호가 강당 건조에 인력과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정기호가 필요한 돈이 부족하면 회장의 집이라도 팔아서 충당하는 것이 옳지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병호, 박재환이 회장에게 무례하고 방자하다고 하면서 한치순 등 네 명을 구타하기에, 제가 말리며 보내주려고 하였습니다."

<c-1> 노성칙을 처음 공초하였습니다. "박재환이 홍정국 집에 있었는데 저를 부르더니 한치순, 정기호, 이치복, 최종신 등을 데려오게 하기에 다른 교인 몇 명과 함께 이치복 등 네 명을 불러왔습니다. 박재환, 김병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태줘야겠다고 말하니, 한치순 등이 따르지 않아 박재환이 여러 번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정기호가 회장이 집을 팔아서 보태면 될 것이요, 우리에게 억지로 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재환이 이치복을 넘어뜨렸고 교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 안에 들어가 정기호의 상투를 잡아끌고 나오고 한치순과 다른 세 명 또한 문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박재환 등이 결박하게 시키자 현병준이 최종신을 결박하고 ... " ...

27) 내한 선교사 편지 프로젝트 구축팀 (2020.09.01.~현재). <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프로젝트 위키. 출처: http://dh.aks.ac.kr/missionary (현재는 연구 진행 중이라 비공개 상태이다)

<d> 박재환이 말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다만 이치복 한 사람만 묶었고, 한치순 등 세 명은 김병호가 잡아오게 한 것입니다. 구타하고 넘어뜨린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니, 홍정국의 처음 진술이 무언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홍정국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이 일에 숨김이 있겠습니까. 박재환이 구타할 때에 내가 잡아당기며 말렸습니다.”

노성칙이 말하였습니다. “네 명이 한꺼번에 불려나온 것은 모두 박재환이 시킨 것입니다. 박재환이 이치복을 넘어뜨린 것은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어찌 거짓으로 꾸미겠습니까.”

박재환이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그러하니,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 [28)]

또 사건 조사보고서인 『해서사핵사주본』이 사건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장르적 규범을 따르면서 놓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정보의 보완을 같은 사건을 목도한 선교사의 편지가 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에 인용한 선교사 편지에서 <a>의 굵게 표시한 부분은 사건 진술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현재 증언하고 있는 홍종국에 대한 인상을 전한 것이다.

---

28) 被告朴在煥與洪正國魯成則面質 ... 洪正國初招에 朴在煥이 先來矣家ᄒᆞ야 使之燃燈ᄒᆞ고 使魯成則等으로 招致韓致淳鄭基浩李致福崔鍾臣等ᄒᆞ야 朴在煥金炳浩가 謂以講堂建造時에 役費補助則鄭基浩가 謂以役費不足이면 雖賣會長之家舍而充補爲可요 不必責費於洞民云云則金炳浩 朴在煥이 稱以褻慢於會長ᄒᆞ고 毆打韓致淳等四人이ᄋᆞᆸ기 矣身이 挽解以送이다이고 魯成則初招內에 朴在煥이 在洪正國家ᄒᆞ야 招致矣身ᄒᆞ야 使之往招韓致淳鄭基浩李致福崔鍾臣等故로 與敎徒數人으로 招來韓致淳等四人則朴在煥金炳浩가 以役費補助爲言이오니 韓致淳等이 不肯聽從ᄒᆞ니 朴在煥이 屢屢言責則鄭基浩가 謂以放賣會長家ᄒᆞ야 以補役費가 爲可요 不必强責云爾則朴在煥이 足踢李致福ᄒᆞ고 謂以敎人等이 安在오ᄒᆞ기로 矣身이 入于房中ᄒᆞ야 執鄭基浩之髻而曳出ᄒᆞ고 韓致淳三人을 亦爲曳出門外則朴在煥等이 使之結縛ᄒᆞ니 玄炳俊이 結縛崔鍾臣이다인바 ... 朴在煥曰伊時에 只招李致福一人而已요 韓致淳等三人은 金炳浩가 使之招來矣라 毆打足踢等說은 實是曖昧ᄒᆞ니 洪正國之招가 或有隱情而然也라 洪正國曰吾豈有隱情於韓致淳야리오 朴在煥行打時에 吾不挽解乎아 魯成則曰四人之一時被招가 皆是朴在煥之所使요 朴在煥之足踢李致福은 吾之所目睹也라 豈有誣供之理乎아 朴在煥曰兩人之招가 如此ᄒᆞ니 無辭發明矣라

Ⅴ. 맺음말

선교사 편지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한국 사회의 근대문화 도입과정과 역동적인 변화상, 그리고 이를 대하는 서구인의 시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자료이다. 이 때문에 선교사 편지는 한국학 분야뿐 아니라 그 외 다양한 학문 분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근대기 내한 선교사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의 컬렉션 중 일부 자료를 국내 기관에서도 일반에게 서비스하고 있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 소장 선교사 편지 가운데 몇 편을 소개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특히 1903년 2월과 3월에 황해도 해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도하고 조사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선교사 편지는 당대 내한 선교사의 외교적 입장까지 담고 있다. 1900년부터 1903년 사이에 황해도 지방의 천주교인과 기독교인 간 일어난 소송사건인 해서교안은 관련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로는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와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이 남긴 문서,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법부(法部) 및 내무행정을 관장하던 내부(內部)의 문서들, 그리고 「황성신문(皇城新聞)」 등이 있는데, 사건 조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미국 국적의 내한 선교사 기록인 편지는 이번에 처음 체계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로써 선교사 편지의 사료적 가치를 입증하고 한국학 연구의 범주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소개한 선교사 편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파견한 조사관의 공식 문서와 작성 동기 및 소재가 같은 반면에, 편지와 조사보고서라는 장르적 차이에서 비롯된 서술 상의 서로 다른 점이 드러난다. 언더우드와 마펫이 쓴 편지는 사건과 관련된 주변 정황부터 실제 재판 내용까지 날짜순으로 기록하였

고, 수신자인 알렌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발신 당사자 간 주고받은 전보나 필요한 문서 등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선교사 편지의 비교 대상인 『해서사핵사주본』은 인물별 심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조사 보고서로서, 재판과 관련한 정황보다는 '피고', 또는 '원고'의 진술 내용을 정해진 틀에 맞추어 기재하였기 때문에 날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해서사핵사주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 정보가 상세하기 때문에 타국의 인명 표기에 서툴렀던 선교사의 편지와 교차확인하면서 기초자료로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1903년 3월 17일 재판에 대한 두 자료의 서술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1차 자료로서 선교사 편지가 가지는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컬렉션 소장 선교사 편지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특히 1903년 해주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았다. 1903년 해주에서는 해서교안과 연루된 사람들의 재판이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이 면밀히 이루어지지는 못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언더우드, 마펫 외에 해주 현장에 파견되었던 헌트(Hunt, William B.), 게일(Gale, James S.) 등 다른 선교사 자료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선교사 편지, 언더우드, 해서교안, 『해서사핵사주본』, 서술 양상

[참고문헌]

구성모 (2020). 한국 기독교 선교 사료 목록화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ACTS 신학저널, 제43집. 205-236.

근대 전환기 알렌 문서 (2019). 성과포털 출처: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6-KFR-1230009

김인수 옮김 (2000). 마포삼열 목사의 선교 편지: 1890~1904.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김인수 옮김 (2002).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1885~1916.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내한 선교사 편지 프로젝트 구축팀 (2020.09.01.~현재). <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프로젝트 위키. 출처: http://dh.aks.ac.kr/missionary

류대영 (1998). 한말 미국의 대한 정책과 선교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9호, 189-219.

박찬식 (1996). 韓末 天主敎會의 성격과 '敎案'. 교회사연구, 제11집, 227-284.

承政院日記, 고종 39년(양력 1903년), 1월 22일.

신광철 (1995). 개항기 한국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海西敎案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11집, 355-380.

신승환 (2019).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해와 인문학. 인문과학, 제116집, 167-196.

오영섭 (2007). 개화기 안태훈(1862-1905)의 생애와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 7-46.

옥성득 책임편역, 숭실대학교 가치와윤리연구소 간행 (2017). 마포삼열 자료집 제3권 [1901-1903]. 서울: 새물결플러스.

이만열, 옥성득 편역 (2005). 언더우드 자료집 Ⅰ~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원순 (1986). 韓國 天主敎會史 硏究.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李應翼. 海西查覈使奏本.

장윤금 (2013).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 (1800-1910). 정보관리학회지, 통권90호. 265-281.

정재현 (2017).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 자료 연구의 의의-미 남감리회 선교사 기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11집, 5-31.

최석우 (1982).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한미경, 장윤금 (2017). 개신교 교육 선교사들의 편지(1885-1942)-북미 기록관 소장 현황. 인문과학, 제111집, 33-61.

한미경 (2020). 내한 선교사 편지(1884-1942)와 디지털 아카이브. 파주: 보고사.

한미경 (2021). [나의 박사 논문을 말한다] 흩어져 있던 선교사 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길. 기독교사상, 통권 제748호, 186-194.

허경진 (2020). 내한 선교사 기록 데이터베이스 편찬의 필요성. 기독교사상, 통권 제737호, 54-67.

허경진 (2021). 처음 발견된 언더우드의 한문 편지. 기독교사상, 통권 제750호, 160-174.

Department of State. U.S. Legation; Korea [발행년불명]. RG84, 84.2 외교공관 기록, 1788-1962, 한국, 1882-1955, box 34, 알렌에게 발신된 편지와 전보.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출처: http://archive.history.go.kr/catalog/view.do?arrangement_cd=ARRANGEMENT-0-A&arrangement_subcode=HOLD_NATION-0-US&provenanace_ids=000000000034&displaySort=&displaySize=50&currentNumber=1&system_id=000000058093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미 국무부재외공관문서(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라는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언더우드 편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내한 선교사 편지는 근대기 우리나라 제분야의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인데 아직까지도 빛을 보지 못한 편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편지는 그 중 일부이며 본고에서는 편지의 작성 시기, 수신자, 내용 및 주제어를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언더우드의 편지는 총 98건이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1903년 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 이유는 그 편지들이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생동감 넘치는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사건의 공식문서인 『해서사핵사주본(海西查覈使奏本)』과 언더우드가 마펫과 함께 쓴 편지를 비교하면서 내한 선교사가 전해주는 열강의 외교 각축장 조선의 역사 속 한 장면을 들여다보고 사건과 조사 과정을 직접 목도한 그들의 외교적 입장까지 살펴보았다. 또, 정부 공식문서와 편지라는 장르적 차이에서 비롯된 서술 양상을 비교하면서 선교사 편지가 가지는 1차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였다.

해서교안은 1900년부터 1903년 사이에 황해도[해서] 지방의 천주교인·기독교인 간 일어난 소송사건이다. 일반적으로 교안(教案)이 일어나면 선교사는 선교본부와 자국의 공사관에 보고하고, 공사는 우리나라의 외부(外部)와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절충을 하게 된다. 이번에 소개하는 선교사 편지는 그동안 몰랐던 외교적 단계 전 '선교사 보고 내용'의 실체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bstract]

A Study on a missionary's letter in the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Focusing on a letter sent from Haeju in 1903

Youn, Hyunsook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Underwood's letter and examine its meaning by being housed in a collection called the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in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mong them, this paper focused on the 1903 letter. The reason is that the letter shows a lively development process centered on one "event".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official document of the case, *해서사핵사주본(海西查覈使奏本)*, and Underwoods letter to Moffett, and looked into a scene in the history of Joseon, a diplomatic arena of powers delivered by a Korean missionary. Haesogyoan is a lawsuit between Catholics and Christians in Hwanghae-do between 1900 and 1903. The missionary's letter introduced in this paper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is a good material that shows the substance of the "missionary report" before the diplomatic stage that has not been known.

【Keywords】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Missionary Letters, Underwood, Haesogyoan,『***해서사핵사주본(海西查覈使奏本)***』, descriptive aspect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14일 /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9일

【저자연락처】 yhs@yonsei.ac.kr